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이동한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의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8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career16@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 10. .

발 의 자 : 이동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1. 제안이유

-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 마련 (안 제2조)
- 나. 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 (안 제3조)
- 다. 상임위원회 위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 라. 상임위원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로 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4명
3. 산업건설위원회 4명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조례안, 규칙안 및 그 밖에 의회 관련 각종 의안에 관

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 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생애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에 속하는 사항
- 바. 동 행정복지센터에 속하는 사항
- 사. 군포문화재단에 속하는 사항
- 아. 군포시청소년재단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 가. 시민중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미래성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수도녹지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군포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군포산업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시작하 되,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 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 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 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중전의 제2조)제1항 중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중요조례안심사 등 특정한”을 “특정한”으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2조)의 제목 중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3조)의 제목 “(위원장)”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에 위원장”을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장”을 “특별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4조)의 제목 “(위원)”을 “(위원의 선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위원”을 “상임위원의 선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중전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신 설></u>	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u> ----- ----- ----- ----- --.
<u><신 설></u>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u>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u> 2. <u>행정복지위원회 4명</u> 3. <u>산업건설위원회 4명</u>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u>의회운영위원회</u> 가. <u>의회운영에 관한 사항</u> 나. <u>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다. <u>의회 관련 조례안, 규칙안 및 그 밖에 의회 관련 각</u>

중 의안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생애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에 속하는 사항

바. 동 행정복지센터에 속하는 사항

사. 군포문화재단에 속하는 사항

아. 군포시청소년재단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시민중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미래성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라. 수도권지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군포도시공사 소관에 속
하는 사항

바. 군포산업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
원회와 협의하여 그 소관 상임
위원회를 정한다.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
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
(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
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
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
된 날로부터 시작하되,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

<신 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중요조
례안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
사하기 위해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둘 수 있다.

② ~ ③(생략)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

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
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
일까지로 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
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
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
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
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
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
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
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
특정한 -----

특별위원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

<u>장 1인</u>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u>위원장이</u>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u>위원장은</u>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u>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u>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u><신 설></u> <u>제5조(위원장의 직무)</u> <u>위원장은</u>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u>제6조 ~ 제8조 (생략)</u>	<u>별위원회에 위원장</u> ----- -----. ② <u>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u>----- -----. ③ <u>특별위원장</u>----- ----- --. <u>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u>----- -----. ② <u>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u> <u>제10조(위원장의 직무)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u>----- -----. <u>제11조 ~ 제13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u>
---	--